

기술용역 입찰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향만공사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 직원 또는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울산향만공사 홈페이지(<http://www.upa.or.kr>) 클린신고센터 또는 우측QR코드를 통해 익명부패신고시스템 케이휘슬(<http://www.kbei.org>)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운영자금 지원 안내]

☐ 선 금

- 지급범위 : 계약금액의 최대 70%*

* 선금지급 기준 및 범위는 국가계약법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 문 의 처 : 계약담당자 혹은 발주부서 담당자

☐ 공공구매론

- 지급범위 : 선금수령액 제외한 금액의 최대 80%(은행 대출)
- 문 의 처 : 한국기업데이터(주)(<http://www.smpploan.com>)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명 : 울산항만공사 건설현장 및 항만시설물 안전컨설팅 용역

나. 용역현장 : 울산항 일원(과업지시서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4개월)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고

마. 설계금액 : 125,000,000원 [(추정가격) 113,636,364원+(부가가치세) 11,363,636원]

※ 설계금액에 용역손해배상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입찰대상** 용역입니다.

나.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입니다.

다. 전자입찰, 제한경쟁,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입니다.

라. 제안서 제출방식은 **온라인 제출**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나라장터**로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바.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용역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손해배상 공제증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 합니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서 **종합진단기관(업종코드 : 5633)** 및 **건설안전진단기관(업종코드 : 5635)**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② 「시설물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업종코드 :**

4963) 또는 **항만분야(업종코드 : 1396)**로 나라장터 시스템에 업종 등록한 자

※ 계약담당자는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 판정할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에 따른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되어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 가능한 **중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에 의거 **비영리법인**도 참가가 가능하나 이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하며, 미등록된 업체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및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 입찰참가신청마감일전까지 등록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있고, 추후, 낙찰자 결정시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서 확인 불가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됨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비영리 관련 사항이 명시된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위 상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발주기관에서 요구한 서류를 갖춰 입찰등록 기한 내에 입찰등록을 필하여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에 의한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및 고의로 무효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의 확인

가. 조달청에 개찰일 전까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완료 하여야 합니다.

-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에 의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 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8호 또는 9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입찰무효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수급에 관한 사항

가. 공동도급계약 : 공동 또는 분담 이행방식 허용

-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안전보건진단기관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모두 등록된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 가능
-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중 참여비율이 높은 구성원을 대표사로 지정하며, ‘사업

책임기술자'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사항

- **제출기한 : 2026.09.14.(월) 18:00**(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제출**
- 대표사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승인”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최종 제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 시 「공동계약 운용요령(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공사귀속

가.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및 제안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9.11.(금) 00:00 ~ 2026.9.15.(화)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제출장소 : 나라장터(<http://www.g2b.go.kr>)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가격 제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조정 합니다.

- 이 영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를 준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영역으로,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및 산출내역서 작성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239,389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나.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제출기간: 전자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장소 및 방법 : 나라장터 내 온라인 제출
- 제출장소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라

라 제안서(전체 용량 300MB 이내) 업로드

※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서류 등은 “제안서 제출 매뉴얼”을 참고하여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 제안서(정성/정량), 발표자료, 부속자료철 각 1식

※ 입찰관련서류(제안요청서 참조)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 제출 관련 유의 사항 >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제안서 제출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최종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상기 제출 경로를 통하지 않은 건도 포함)와 첨부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 일시 : 2026. 09. 22.(화) 14:00 (예정)

나. 제안서 평가 장소 : 울산항만공사 2층 혁신회의실

다.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요청서 “평가 방법” 참조

-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제출 당시 제출한 사업책임기술자(PM)가 직접 하여야함
- 제안서 발표 당일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발표자료) 각 10부를 서면으로 제

출하여야함

- 제안서 발표자료는 기 제출한 제안요약서(발표자료)만 활용가능하며, 그 외 추가자료 활용 불가
-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출 순서에 따름

9. 가격평가 개찰일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6. 09. 22.(화) 14:00 이후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집행관 PC

10. 낙찰자결정 및 예정가격

가. 낙찰자결정 :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 1) 평가방법 : 기술제안서평가 80% / 가격평가 20%
- 2) 세부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내 평가기준 참조
- 3)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제안가격이 당해 사업예산 이내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을 진행합니다.

나. 예정가격 : 비예가 방식입니다.

11.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12. 입찰의 무효

가. 입찰의 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44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20조(입찰무효의 범위) 규정,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전자계약서 인지세 공동납부 알림

가. 전자계약서 체결 시 인지세는 계약상대방과 우리공사가 다음과 같이 공동부담 하고 있습니다.

- 지급방법 : 최초 대금청구 시 인지세 납부금액의 50% 환급

14.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상생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 울산항만공사 상생결제 약정은행 : 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
- 낙찰자는 최초 대금수령 전까지 상기 약정은행 대상으로 상생결제 이용에 대한 약정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방은 최초 대금 지급 전 상생결제 시스템을 통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동도급사·하도급사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약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약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약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하도급 발생 시 「상생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및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계약예규 등 모든 계약기준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계약예규, 고시, 통첩 등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 등 입찰에 관한 정보는 공사 홈페이지 입찰정보/입찰자료, 계약 및 입찰 관련 규정은 나라장터 및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문의사항

- 계약 관련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052-228-5363)
- 용역 관련 : 울산항만공사 항만건설실(052-228-5491). 끝.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 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6.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

【붙임2】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 이용 약약서

당사는 울산항만공사에서 시행하는 □□계약에 대한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약합니다.

- 당 사는 공사에서 지정한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지급 청구 및 하도급 대금 등을 지급하겠습니다.
- 당사 몫 외의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당사는 공사의 노무비, 하도급 대금 등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울산항만공사사장 귀하